

# 마포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3-54

제출년월일 : 2023. 5. .

제출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 1. 제안 이유

어린이 및 노인·장애인의 건강 증진을 위해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함에 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마포구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가. 위탁사무명: 서울시 마포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1)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운영의 위탁)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업무의 위탁)
-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 사무 등)

### 2) 추진 필요성

- 민간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내실있는 시설 운영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환경 제공
- 역량있는 전문기관(이화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인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의 효율성 제고

다.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

- 어린이·사회복지 급식소의 위생·영양관리 순회방문지도 및 컨설팅 지원

- 어린이·사회복지 급식소의 대상별\* 교육 실시
  - \* (어린이) 어린이, 조리원, 원장, 교사, 부모
  - (사회복지) 입소자, 조리원, 시설장, 돌봄종사자, 가족 또는 보호자
- 어린이·사회복지 연령별·대상별·질환별 식단·조리안내서 제공
- 어린이·사회복지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 등 식생활 관련 정보 제공
- 어린이·사회복지 급식소의 위생·영양관리 실태조사

**라. 위탁시설의 개요**

소재지	규모 및 시설	위치도
마포구 만리재로 96, 4층 (공덕동)	149.5㎡ (사무실 1, 회의실 1, 다용도 교실 1)	

**마. 위탁기간:** 2023. 7. 1. ~ 2025. 12. 31.

※ 현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위탁계약 체결되어 운영 중이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신규설치시 해당 수탁기관과 계약변경 체결을 통해 업무 수행

**바. 수탁자 선정방식**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의거 「마포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수행

※ 서울시 마포구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명칭변경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구분	계	어린이급식관리시설	사회복지급식관리시설
예산	575백만원	525백만원	50백만원
산출근거	인건비 67%, 운영비 27%, 국내여비 등 6%		
재원	국비30%, 시비35%, 구비35%		

**아.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민간위탁 적정성 사전검토서 참고

###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에 관한 법률>

##### 제5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중인 경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본다.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운영의 위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업무의 위탁)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식품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등) ① 구청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민간위탁 적정성 사전검토서

<b>위탁사무명</b>	서울시 마포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b>국 명</b> (주관부서)	마포구보건소 (위생과)	<b>부서장</b>	(행정5급, 김정희, 9190)
		<b>팀 장</b>	(보건6급, 권일오, 9181)
		<b>담당자</b>	(보건7급, 조은아, 9183)
<b>사무개요</b>	○ 사업대상 및 기간		
	<b>구분</b>	<b>어린이급식시설</b>	<b>사회복지급식시설</b>
	<b>대상</b>	영양사가 없는 100인 이하 어린이급식시설	영양사가 없는 50인 이하 사회복지·장애인급식시설
	<b>현황</b>	203개소	15개소
	<b>인력</b>	10명	2명
	<b>기간</b>	2023.1.1.~2025.12.31.	2023.7.1.~2025.12.31.
	○ 주요내용 - 어린이·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안전관리를 위한 현장순회방문 및 급식소 컨설팅 등		
<b>민간위탁 추진목적</b>	○ 영양사 등 식품영양 전문인력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어린이·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에 기여		
<b>위탁근거</b>	○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 -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상급기관 지침 및 방침서 기재 -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 통합가이드라인(식품의약품안전처)		
<b>위탁내용</b>	○ 추진경위 - 2023년 마포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계획 ○ 추진현황 - 2023.7.1. 추진 예정 ○ 위탁기간: 2년6개월(2023. 7. 1. ~ 2025. 12. 31.) ○ 위탁내용 - 어린이·사회복지 급식소의 위생·영양관리 순회방문지도 및 컨설팅 지원 - 어린이·사회복지 급식소의 대상별* 교육 실시 * (어린이) 어린이, 조리원, 원장, 교사, 부모 (사회복지) 입소자, 조리원, 시설장, 돌봄종사자, 가족 또는 보호자 - 어린이·사회복지 연령별·대상별·질환별 식단·조리안내서 제공 - 어린이·사회복지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 등 식생활 관련 정보 배공 - 어린이·사회복지 급식소의 위생·영양관리 실태조사		

<b>적정성 검토</b>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의거 자치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설치·운영중인 경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사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th> </tr> <tr> <td style="width: 33%;">①</td> <td colspan="2">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td> </tr> <tr> <td>②</td> <td colspan="2">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중인 경우에는 <b>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b> 이 경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본다.</td> </tr> </table>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중인 경우에는 <b>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b> 이 경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본다.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중인 경우에는 <b>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b> 이 경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본다.														
<b>기 존 수탁기관 및 선정방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수탁기관: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마포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li> <li>○ 선정방법: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의거 자치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설치·운영중인 경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사업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수행토록 하여야 함.</li> </ul>														
<b>수탁기관 선정방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의거 마포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수행하여야 함.</li> </ul>														
<b>민 간 위탁금 (예산지원형 위탁 시 기재)</b>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15%;">연도별</th> <th style="width: 30%;">민간위탁금(천원)</th> <th style="width: 55%;">세부 산출내역</th> </tr> </thead> <tbody> <tr> <td>2021년</td> <td>525,000</td> <td>어린이급식관리지원(인건비, 사업비, 운영비)</td> </tr> <tr> <td>2022년</td> <td>525,000</td> <td>어린이급식관리지원(인건비, 사업비, 운영비)</td> </tr> <tr> <td>2023년</td> <td>575,000</td> <td>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인건비, 사업비, 운영비)</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년 증가내역: 50,000천원(국비 30%, 시비 35%, 구비 35%)</li> <li>- 증가사유: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사업 추진</li> </ul>			연도별	민간위탁금(천원)	세부 산출내역	2021년	525,000	어린이급식관리지원(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2022년	525,000	어린이급식관리지원(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2023년	575,000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연도별	민간위탁금(천원)	세부 산출내역													
2021년	525,000	어린이급식관리지원(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2022년	525,000	어린이급식관리지원(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2023년	575,000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b>사 용 료 (자립형 위탁 시 기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없음</li> </ul>														
<b>기대효과 및 향후계획</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변경협약 체결(센터명칭 및 사업내용 추가 등): 2023. 6.중</li> <li>○ 마포구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2023. 7. 1.~</li> <li>○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시설 안전·위생관리</li> </ul>														

시설개요	시 설 명	마포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예정)		
	소 재 지	마포구 만리재로 96(4층)		
	시설규모	149.5㎡(사무실 1, 회의실 1, 다용도 교실 1)		
	시설용도	사무실		
	이용대상	소속직원 및 관계자	수용인원	
	보유장비현황			



지역여건

- 교통의 요지인 공덕동에 위치하고 있음
-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좋음

